

(사업방법서 별지)

1.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

2. ( )가 , ,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만15세 ~ 70세	종신	종신	월납

3. 가

1,000만원 이상

4.

배당금이 없음

5.

가. 보험료의 구성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 나. 보험료 납입한도

### (1) 기본보험료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한도
15~49세	보험가입금액의 1%~ 2%
50~59세	보험가입금액의 2%~ 3%
60~70세	보험가입금액의 3%~ 4%

### (2)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보험료 납입한도
2년(24회 납입) 이내	24회분의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매년 납입하기로 한 연간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6.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이라 한다)에서 공제한다.

## 7.

가.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이하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의무납입기간에 납입하여야 하는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라.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우선적으로 의무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며,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단, 의무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마. 의무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8.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감액하거나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증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9. 가

-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감액하거나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증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하여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가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8. 기본보험료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마.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 10. ( )

- 가.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나.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11.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단, 계약자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2.**

회사는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13.**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4.

- 가.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단,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나.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 이내에 한하며, 인출 후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 잔액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 15.

(       )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승낙일로 한다.

## 16.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상환일에 상환일 기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체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약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17.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 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을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로 한다.

## 18.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 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인하할 경우 변경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② 성장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③ 혼합간접형 :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이내에서 투자한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년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단,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후부터 보험년도 중 년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4) 회사는 ‘(3)’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5) 회사는 ‘(3)’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 적립금의 0.1%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4)’의 현금 이전시 공제한다.

#### 라.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  
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된다.  
단,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  
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1)’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

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사.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 할 수 있다.

#### 아.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 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 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9.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17.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

한 사항' 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단,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0.

가.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 다.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총좌수

(2) 특별계정 기준가격

(3) 특별계정 자산총액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7)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

라.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 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자격상실에 따른 보험 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 1인을 새로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

는 단생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